

# 2025년 관세사 1차 시험 대비 개정 공지

윤준필 관세사

- 관세법 시행령(2025.2.28.)일자로 개정됨.
- 관세사 시험은 시험일 당일 시행 중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적용됨.
- 1차 시험의 경우 2월 28일 시행을 기준으로 반영됨.  
[본 개정 공지 중 2025년 2월 28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사항(25.7.22 및 26.1.1 시행법령)은 제외되어 있음]

### 1. 교재 p25 → √핵심체크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시행령 제3조 제1항)

- 법 제235조 지식재산권의 범위 확대에 따른 표현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 ㉡ (생략) ㉢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 - ㉡ (현행과 같음) ㉢ <u>지식재산권 등의</u>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2. 교재 p54 → ㉠ (1) 2) 및 3)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 가격신고시 제출서류 생략 조건 개정 및 포괄신고 근거규정 명시

개정 전	개정 후
2) 가격신고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1)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①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2) 가격신고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1)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① 같은 <u>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u>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3)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상기 2) ①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상기 2) ①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u>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u>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3. 교재 p55 → √핵심체크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시행령 제15조 제5항)

• 제출대상 과세가격결정자료의 구체화

개정 전	개정 후
<p>(본문 생략)</p> <p>① 송품장</p> <p>② 계약서</p> <p>③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p> <p>④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p>	<p>(본문 생략)</p> <p>① 송품장</p> <p>② <u>수입물품 구매계약서</u></p> <p>③ <u>다음의 자료</u></p> <p style="padding-left: 20px;">㉠ <u>가산요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u></p> <p style="padding-left: 20px;">㉡ <u>간접지급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u></p> <p style="padding-left: 40px;">㉠ <u>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u></p> <p style="padding-left: 40px;">㉡ <u>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u></p> <p style="padding-left: 40px;">㉢ <u>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u></p> <p style="padding-left: 20px;">㉢ <u>공제요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 <u>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u></p> <p>④ <u>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u></p> <p>⑤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p>

4. 교재 p60 → (4) 확정가격신고 제출서류(시행령 제16조 제5항)

• 상기 3. 과세가격결정자료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p>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영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 ③ (생략)</p>	<p>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u>영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u>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5. 교재 p93, 94 → 5) 사전심사 신청의 반려, 4) 재심사 신청의 반려(시행령 제31조 제6항)

- 과세가격 사전심사 반려사유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p>p93</p> <p>5) 사전심사 신청의 반려 [시행령 제31조 제6항]</p> <p>관세청장은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p> <p>① - ④ (생략)</p>	<p>p93</p> <p>5) 사전심사 신청의 반려 [시행령 제31조 제6항]</p> <p>관세청장은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u></p>
<p>p94</p> <p>4) 재심사 신청의 반려 [시행령 제31조 제6항]</p> <p>관세청장은 재심사의 신청이 상기 (1) 5)의 ①부터 ④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p>	<p>p94</p> <p>4) 재심사 신청의 반려 [시행령 제31조 제6항]</p> <p>관세청장은 재심사의 신청이 <u>상기 (1) 5)의 ①부터 ⑤에</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p>

6. 교재 p94 → √ 핵심체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요건(시행령 제31조 제7항)

- 특관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 세분화

개정 전	개정 후
<p>상기 (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의 요건을 말한다.</p> <p>① - ③ (생략)</p> <p>④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고될 것</p>	<p>상기 (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의 요건을 말한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u></p> <p><u>㉠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u></p> <p><u>㉡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부터 ㉢까지의 기간</u></p> <p><u>㉢ 결과의 통보일</u></p> <p><u>㉣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다만,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u></p>

	<u>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u>
--	---

7. 교재 p99 (교재 정오표 먼저 확인) → √ 핵심체크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제출기한 연장(시행령 제31조의5 제6항)

• 최대한 1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가산요소 등에 대한 계산 가능성 검토사항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1. - 3. (생략) 4.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생략) ② 법 제31조(2평가방법)부터 제35조(6평가방법)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1. - 3. (현행과 같음) 4.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u> ③ <u>법 제31조(2평가방법)부터 제35조(6평가방법)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u>

8. 교재 p292 → (3)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시행령 제56조 제3항)

• FTA특례법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상기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① - ④ (생략) 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상기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① - ④ (생략) ⑤ 「 <u>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u> 」 제9조제6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u>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u>

9. 교재 p322 → ㉓ √ 핵심체크 중복조사의 금지(시행령 제136조)

- 중복조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 세분화

개정 전	개정 후
<p>상기 3. (2)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상기 3.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① <u>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u></p> <p>② <u>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u></p> <p>③ <u>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u></p>

10. 교재 p337 → ㉔ (1) √ 핵심체크 출국금지 등 대상자(시행령 제141조의11 제1항)

- 체납관세 금액요건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p>상기 1.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p> <p>① - ④ (생략)</p> <p>⑤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p> <p>⑥ (생략)</p>	<p>상기 1.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u></p> <p>⑥ (현행과 같음)</p>

11. 교재 p358 → (6) 민간위원의 제한(시행령 제144조의3 제6항)

- 전문자격사 민간위원의 위임·위촉 제한 사유 중 경징계 제외

개정 전	개정 후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p> <p>① - ② (생략)</p> <p>③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④ (생략)</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u>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u>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④ (현행과 같음)</p>

12. 교재 p404 → (3) 승선 또는 탑승신고(시행령 제163조)

- 하역 운송차량의 추가정보 제출의무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여객 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① - ③ (생략)</p>	<p>여객 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다음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u></p> <p>㉠ 선박용품</p> <p>㉡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p> <p>㉢ <u>법 제143조제1항제3호(원양어선에 무상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따른 물품</u></p>

13. 교재 p438~439 → (2) ✓ 핵심체크 5. 보세사 시험업무의 위탁(시행령 제185조 제9항)

- 보세사 시험업무 위탁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 제329조 보칙으로 승격하여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p>5. 보세사 시험업무의 위탁</p> <p>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7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del>5. 보세사 시험업무의 위탁</del></p> <p><del>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7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del> (삭제)</p>

14. 교재 p486 → (2) ✓ 핵심체크 특허비용 적용제외 사유(시행령 제192조의2 제5항)

-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 구체화

개정 전	개정 후
<p>상기 (2)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하기 2. (1) 또는 (2)에 따른 특허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p> <p>② 영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p>	<p>상기 (2)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① <u>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u> 하기 2. (1) 또는 (2)에 따른 특허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p> <p>② 영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u>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u></p>

15. 교재 p489 → ㉒ (1)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특허부여(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

-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 구체화

개정 전	개정 후
<p>상기 1. (1)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p> <p>① - ③ (생략)</p>	<p>상기 1. (1)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라 한다)</u>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중견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라 한다)</u>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16. 교재 p487 → (3) √ 핵심체크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시 평가기준(시행령 제 192조의3 제2항)

•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표현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p>(2) 상기 1.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p> <p>① - ⑥ (생략)</p> <p>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p>	<p>(2) 상기 1.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b>「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b>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p>

17. 교재 p486 → ㉠ (1) 기업규모별 보세판매장 특허비율(법 제176조의2 제1항)

• 보세판매장 특허비율 부여 규정의 가독성 제고

개정 전	개정 후
<p>세관장은 상기 VI. 1. (1)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법 제174조 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VI. 1. (2)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입국장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p>	<p>세관장은 상기 VI. 1. (1)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b>다음의 기업으로서</b>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법 제174조 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VI. 1. (2)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입국장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p> <p>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p> <p>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p>

18. 교재 p541 → ㉒ (1) 등록신청서 및 기재사항(시행령 제231조 제2항)

- 보세운송업 등록 절차 근거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 ③ (생략)</p>	<p>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b>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b>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b>신청서 및 첨부서류</b>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0

19. 교재 p571 → (2) ✓ 핵심체크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시행령 제237조 제1항 및 제2항)

- 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범위 확대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p>① 지식재산권을 상기 (2)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 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㉞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㉟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㉞ - ㉟ (생략)</p> <p>②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① <b>지식재산권 등을</b> 상기 (2)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b>지식재산권 등을</b>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㉞ <b>지식재산권 등을</b>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㉟ <b>지식재산권 등의</b> 내용 및 범위 ㉞ - ㉟ (현행과 같음)</p> <p>② <b>지식재산권 등의</b>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20. 교재 p572 → (4) ✓ 핵심체크 통관보류 등의 요청(시행령 제238조)

- 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범위 확대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p>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생략) ②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③ - ④ (생략)</p>	<p>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 ② <b>지식재산권 등의</b> 내용 및 범위 ③ - ④ (현행과 같음)</p>

21. 교재 p573 → (5) √ 핵심체크 통관보류 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요청(시행령 제240조 제1항)

• 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범위 확대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p>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물품의 화주가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물품의 화주가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u>지식재산권 등을</u>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22. 교재 p574 → √ 핵심체크 통관보류 등의 절차(시행령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 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범위 확대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p>(1) 통관보류 등 세관장은 통관보류 등이 요청된 상기 2.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p> <p>(2) 통보 세관장은 통관보류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 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물품의 화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 등의 사실 및 다음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p> <p>① - ③ (생략)</p>	<p>(1) 통관보류 등 세관장은 통관보류 등이 요청된 상기 2.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u>지식재산권 등을</u>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u>지식재산권 등의</u>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p> <p>(2) 통보 세관장은 통관보류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 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물품의 화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u>지식재산권 등의</u>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 등의 사실 및 다음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p> <p>① - ③ (헌행과 같음)</p>

23. 교재 p575 → (9)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시행령 제242조)

• 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범위 확대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p>1) 전문인력 및 시설제공 세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p> <p>2) 검사 및 견본품 채취요청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물품의 화주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출입신고 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통관보류 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p> <p>3) 세부규정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p>	<p>1) 전문인력 및 시설제공 세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u>지식재산권 등</u>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u>지식재산권 등의</u> 권리자로서 하여금 <u>지식재산권 등에</u>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p> <p>2) 검사 및 견본품 채취요청 세관장은 <u>지식재산권 등의</u> 권리자,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물품의 화주가 <u>지식재산권 등의</u>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출입신고 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통관보류 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p> <p>3) 세부규정 <u>지식재산권 등</u>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p>

24. 교재 p578 → ⑥ (1) 반입명령 대상물품(시행령 제245조 제1항)

• 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범위 확대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p>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 - ③ (생략)</p> <p>④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p>	<p>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u></p>

25. 교재 p627 → (2) ✓ 핵심체크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시행령 제261조)

• 표현 수정에 따른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상기 4.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p> <p>① - ④ (생략)</p> <p>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p> <p>    ㉠ - ㉢ (생략)</p> <p>    ㉡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p> <p>⑥ (생략)</p>	<p>상기 4.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b>수입물품</b></p> <p>    ㉠ - ㉢ (현행과 같음)</p> <p>    ㉡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b>수입신고가</b>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p> <p>⑥ (현행과 같음)</p>

26. 교재 p655 → (4) 무기 관리 의무(시행령 제265조 제1항 및 제2항)

• 법 개정에 따른 무기 범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p>①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무기의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가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①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b>무기 등의</b>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b>무기 등의</b>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b>무기 등이</b>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27. 교재 p710 → (1) ✓ 핵심체크 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시행령 제274조)

• 한자표현 한글화 작업에 따른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세관의 개청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p> <p>①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세관의 <b>업무시간</b>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p> <p>① 세관의 <b>업무시간</b>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28. 교재 p711 → √ 핵심체크 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시행령 제275조)

- 어려운 한자표현을 쉬운 용어로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1) 임시개청 통보서 제출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개청시간 외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p> <p>(2) 시간외 물품취급 통보서 제출 ① (생략) ② 임시개청 통보한 시간 내에 해당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 ③ - ⑦ (생략)</p> <p>(3) 통보서 기재사항 임시개청 통보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 ④ (생략)</p> <p>(4) 사전통보 시기 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에 대한 사전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p>	<p>(1) <b>임시업무</b> 통보서 제출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b>업무시간 외</b>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p> <p>(2) 시간외 물품취급 통보서 제출 ① (생략) ② <b>임시업무</b> 통보한 시간 내에 해당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 ③ - ⑦ (생략)</p> <p>(3) 통보서 기재사항 <b>임시업무</b> 통보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 ④ (생략)</p> <p>(4) 사전통보 시기 <b>임시업무</b> 및 시간외 물품취급에 대한 사전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p>

29. 교재 p716 → √ 핵심체크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시행령 제276조의2)

- 통계 작성·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p> <p>(1) - (5) (생략)</p>	<p><u>통계 작성·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u></p> <p><b>(1) 대행기관 지정 요건</b> <u>관세청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p>

② 수출입 관련 통계의 작성·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 것

③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 (2) 제출서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상기 (1)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지정 검토 및 결정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4) 지정해제 사유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하기 (5)에 따른 시정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 (5) 시정명령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상기 (4)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 (6) 세부규정

상기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교재 p717 → √ 핵심체크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시행령 제276조의3)

- 조항변경에 따른 단순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시행령 제276조의2]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시행령 제276조의3]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31. 교재 p739 → √ 핵심체크 보세화물 처리 업무별 권한 위탁 (시행령 제288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 “권한” 표현 수정 및 위탁 업무 범위 변경에 따른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1) 세관장은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의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p> <p>(2) 세관장은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p> <p>(3) 세관장은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p>	<p>(1) 세관장은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 <b>업무를</b>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p> <p>(2) 세관장은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b>업무를</b>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p> <p>(3) 세관장은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b>법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b>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p> <p>① <b>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업무</b></p> <p>② <b>법 제222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보고의 수리 및 서류제출의 접수에 관한 업무</b></p> <p>③ <b>법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의 갱신 및 연장에 관한 업무</b></p>

32. 교재 p740 → √ 핵심체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일부 업무 위탁 (시행령 제288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 보세사 시험업무 위탁사항 신설에 따른 조항 순서 개정 및 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범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u>장에게</u> 위탁한다.
(2) 관세청장은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2) 개정전 (1)의 내용  (3) 관세청장은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u>지식재산권 등의</u>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u>지식재산권 등</u>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3) - (4) (생략)	(4) 개정전 (3)의 내용  (5) 개정전 (4)의 내용

33. 교재 p740 → (6) 위탁업무 관련 고시의무 및 (7) 지휘·감독사항 관세청장 고시 (시행령 제288조 제12항 및 제13항)

- 신설 조항에 따른 순서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6) 위탁업무 관련 고시의무(시행령 제288조 제12항)	(6) 위탁업무 관련 고시의무(시행령 제288조 <u>제13항</u> )
(7) 지휘·감독사항 관세청장고시(시행령 제288조 제13항)	(7) 지휘·감독사항 관세청장고시(시행령 제288조 <u>제14항</u> )

(이상)